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70

발의연월일: 2024. 11. 7.

발 의 자:정춘생·김준형·차규근

황운하 · 신장식 · 김재원

김선민·조 국·박은정

이해민 · 서왕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방안전교부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음.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에 배분하고 있으나, 2024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인건비에 충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분야에 보다 많은 금액을 배분하도록 한 소방안전교부 세의 교부비율 의무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소방분야에 대한 의무비율 이 삭제될 경우 소방장비 보급 부족 등으로 소방관이 생명과 국민안 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소방안전교부세를 토대로 소방정책을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법률 제 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을 "소방안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금액을 해당분야에 충당하되, 그 교부기준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 소방 인력 운용
-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15: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 ② 소방안전교부세는 다음 각 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금액 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 을 해당 분야에 충당하되. 그 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 교부기준은-----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 -----. <단서 삭제> 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 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 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1.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 <신 설> 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 액의 100분의 25: 소방 인력 운용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 <신 설> 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 액의 100분의 15: 소방시설 (소방장비를 포함한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u> <신 설></u>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
	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
	액의 100분의 5: 안전시설 확
	충 및 안전관리 강화